



서울교육대학교
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



서울교육대학교-주식회사 원티드랩 업무협약서

서울교육대학교와 주식회사 원티드랩 간 소프트웨어(SW)·인공지능(AI)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서는 기관 간 상호 긴밀한 협력하에 시장의 트렌드 기반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조기 SW·AI 교육을 추진하고 생태계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 운영 원칙) 협력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력한다. 또한,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간 별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.

제3조(협력 분야) 협력 기관은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한다.

1. 4차산업시대에 적합한 SW·AI 교육 제공 및 진로 탐색을 위한 협력
2.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개최를 위한 협력
3.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 협력
4. 기타 상호 기관의 공동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분야

제4조(기밀유지) 협력 기관 간 추진되는 사업의 공동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과 자료는 협력 기관 간 사전에 상호 동의가 없이 외부에 유출, 누설, 도용 및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으며, 상호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5조(효력)

1.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한다. 다만 협약 만기일 30일 전에 협약 기관 전원 합의에 따라 1년씩 연장할 수 있다.
2. 이 협약은 상호 신의 성실과 호혜 정신에 입각하여 해당 기관의 협력을 위한 기본 사항에 대한 협약으로서 제4조(기밀유지)를 제외하고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.

제6조(해석)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제7조(기타 사항)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, 합의사항 수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8조(협약서 보관) 업무 제휴 협약의 성공적인 추진 및 수행을 위하여 협력 기관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, 업무 협약서가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.

2023년 7월 26일

서울교육대학교
총장 임채성

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96

임채성

주식회사 원티드랩
대표 이복기

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 35층

이복기